

뉴스 요약

1. 제9회 특허컨퍼런스(Patent Information Annual Conference of China) 8월말 북경에서 개최
2. 2018년 중국 상표 페스티벌(China Trademark Festival) 산유 살롱 9월초 개최
3. 국가지식재산권국 최초로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통계데이터 집중 발표
4. 최고인민법원 민법총칙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사법해석 발표(해석 전문 첨부)
5. 북경 온라인법원 설립 예정
6.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중국단계(지정) 심사주기 대폭 단축

제9회 특허컨퍼런스(Patent Information Annual Conference of China)

8월말 북경에서 개최

특허 업계 각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지도하에 지식재산권출판사에서 주최하는 제9회 특허컨퍼런스가 다가오는 2018년 8월 30일~31일에 Beijing Etrong International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北京艺创国际会展中心)에서 진행하게 된다. 상세주소는 “북경 경제개발구 룡창동길 6번 (北京经济技术开发区荣昌东街6号)”이며, 이번 특허컨퍼런스에서의 산유부스는 64, 66호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특허, 대외개방을 추진”이다. 또한 이번 특허컨퍼런스에서 북경산유지식재산대리유한회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수요가 있는 세계각지에서 오신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오셔서 문의하시고 교류 및 협력의 기회가 있길 바란다.

2018년 중국 상표 페스티벌(China Trademark Festival)

산유 살롱 9월초 개막 예정

“중국 상표 페스티벌”은 전세계 최대 상표 국제축제 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국내외 상표 분야의 전문가, 기업가와 상표분야 전문인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기타 나라와 지역의 관련 부서, 업계조직으로부터 높은 중시를 받았다. 2018년 중국 상표 페스티벌은 8월 31일~9월 3일에 하북성 탕산(唐山)시에서 진행하게 되며 이번 상표 페스티벌의 주제는 “창조, 보호, 운영”이다.

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회사는 2018년 9월 2일 오전9:00~12:00에 Tangshan Southlake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唐山南湖国际会展中心) 3층 “칭청팅(庆成厅)”에서 “이례적인 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주제로 하는 살롱을 진행하게 되며, 중화상표협회 부비서장 Baoqing ZANG, 상표국 상표심사처장, 북경고급인민법원 판사, 산유 변호사, 상표변리사가 살롱에 참석하여 이례적인 상표에 대한 소개 및 등록출원에 대한 실무경험, 이례적인 상표의 권리보호 전략, 이례적인 상표권 침해소송건 소개 및 분석, 심사시점에서 출원인이 이례적인 상표 등록출원에서의 흔히 발생하는 문제 및 제안 등 주제를 분석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게 된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최초로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통계데이터 집중 발표

7월 10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북경에서 2018년 제3분기 정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올해 진행하는 제3회 기자회견이며 국가지식재산권이 재편성 후 처음으로 사회에 집중적

으로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관련 통계데이터를 발표하게 된다.

2018년 상반기, 중국 주요 지식재산권 수치는 비교적 빠른 증가를 실현하였으며 양호한 발전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중국 발명특허 출원과 등록량이 각각 75.1만건과 21.7만건에 도달하였고 상표등록 출원량은 358.6만건이며 새로 수리한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신청은 10개에 달한다.

이번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국 발명특허 출원량은 75.1만건, 발명특허등록은 21.7만건이며, 그 중 국내 발명특허등록은 17.1만건이다. 국내 발명특허등록 중 직무발명은 15.9만건으로 93.2% 차지하였고, 비직무발명은 1.2만건으로 6.8% 차지하였다. 2018년 6월말까지, 중국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하지 않음) 발명특허 소유량은 총 147.5만건으로 매 만인구당 발명특허 소유량이 10.6건에 도달하였다. 이외에 올해 상반기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특허협력조약(PCT)” 경로를 통하여 제출한 국제특허 출원을 2.30만건 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6.3% 증가하였다. 그 중 2.16만건은 국내건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다.

2018년 상반기, 중국 상표등록출원량은 358.6만건이고, 306.5만건의 상표심사를 완성하였다. 2018년 6월말까지, 중국상표 누적 출원량은 3142.8만건이고, 누적 등록량은 1939.5만건이며, 유효등록상표량은 1680.7만건인 것으로 평균 매6.1개의 주체가 한개의 유효상표를 소유하고 있다. 허가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와 증명상표는 4359건이며 그 중 해외건은 171건이다. 상표등록 심사주기는 8개월에서 7개월 좌우로 단축되었다.

2018년 상반기, 중국 새로 수리한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신청은 10개이고, 새로 허가받은 지리적 표시 보호제품은 46개이며, 새로 사용을 허가받은 지리적 표시제품 전문표시기업은 135개이다. 2018년 6월말까지, 누적 지리적 표시 보호제품은 2359개이며 그 중 국내제품은 2298개, 해외제품은 61개이다. 또한 누적 설립한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시범구역은 24개이고, 누적 허가받은 전용표시 사용 기업

은 8091이며 관련 생산액은 1만억위안을 초과하였다.

2018년 상반기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의 관련 통계데이터는 주요 4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중국지식재산권의 창조 및 운영 수준이 안정적이며 발전이 있다. 국내 발명특허 등록량과 소유량은 전년대비 각각 6.5%와 19.5% 증가하였다. 매만인구당 발명특허 소유량은 2017년말보다 0.8건 제고되었고, 상표등록의 간편화 수준도 점차 제고되고 있으며, 상표등록출원량은 전년대비 57.5% 증가하였다.

둘째, 국내기업의 혁신주체로서의 입지가 계속하여 강화되고 있다. 국내 발명특허 등록량과 소유량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례는 각각 63.8%와 67.2%에 도달하였고, 국내기업 유효발명특허의 5년이상 유지율은 71.2%에 도달하였다.

셋째, 중국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출원수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PCT국제특허 출원을 100건이상 제출한 기업은 17개이고, 올해 5월까지 마드리드 상표국제등록출원은 2228건으로 전년대비 80.69% 증가하였으며 마드리드연맹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넷째, 중국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진일보 최적화되었다. 상반기 전국 특허행정집행 처리사건 총량은 전년대비 29.5% 증가하였으며 그 중 특허분쟁 처리사건은 전년대비 41.0% 증가하였다. 상표위법사건을 1.36만건 조사처리하였고 관련 재산은 2.1억위안을 초과하였다. 중국은 진일보 좋은 영업환경과 혁신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법총칙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사법해석 발표

(해석 전문 첨부)

2018년 7월 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74차 회의에서 법석[2018]12호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약간문제에 대한 해석>(아래 <해석>이라고 함)을 통과하였으며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본 해석의 핵심내용은 민법총칙의 1년 단기 소멸시효 규정에 대한 적용문제이다. 민법총칙은 1년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였지만 민법총칙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실천중에서 민법총칙이 시행된 후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여전히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민법총칙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는 성실사회의 건설에 유리하며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약간문제에 대한 해석>은 이미 2018년 7월 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7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지금 공포하며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8년 7월 18일

법석[2018]12호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약간문제에 대한 해석

(2018년 7월 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74차 회의에서 통과,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판실무와 결합하여 본 해석을 제정하였다.

제1조 민법총칙 시행 이후에 소멸시효가 기산될 경우, 민법총칙 제188조의 3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민법총칙에 규정된 2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 민법총칙 시행 당일까지 소멸시효가 민법총칙에서 규정한 2년 또는 1년이 만료되지 않았고 당사자가 민법총칙의 3년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3조 민법총칙 시행 이전에 민법총칙에서 규정한 2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고 당사자가 민법총칙의 3년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4조 민법총칙 시행 당일까지 시효를 정지시키는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민법총칙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 본 해석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해석이 시행된 후 사건이 1심 또는 2심 단계에 처해 있을 경우, 본 해석을 적용한다. 본 해석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심을 마친 사건의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본 해석을 적용하지 않는다.

북경 온라인법원 설립 예정

북경온라인법원은 현재 바쁘게 계획 및 설립 중에 있다.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한 <북경온라인법원, 광주온라인법원 증설에 대한 방안>을 실현하고, 북경 사법이 온라인 경제의 혁신발전

을 추진하고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며 온라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면에서의 기능작용을 전면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새로 설립된 북경온라인법원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쟁을 주로 온라인 소송을 통하여 심사하는 원칙에 따라 온라인심사 방식으로 온라인사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온라인 정보기술을 더욱 깊이 응용하는 기초하에서 온라인심사 체계를 혁신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지도하에 신형 온라인사건 소송절차와 사법규칙을 구축하여 사이버 공간 관리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요해에 따르면, 북경온라인법원은 집중적으로 전시(市) 관할구역내의 특정유형 온라인에 관련한 1심사건을 관할하게 된다. 온라인 시대에 맞는 심사표준을 모색하고 기소, 조정, 입안, 법정심문, 판결, 집행 등 소송절차 전과정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심판에 걸맞는 절차 및 규칙을 정하고 전체 유형 사건의 표준화, 지능화 심사표준을 수립하게 된다.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고 지역을 뛰어넘어 심사하는 우세를 발휘하며 당사자의 소송 참여절차를 간편화 한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중국단계(지정) 심사주기 대폭 단축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실체심사 업무의 질과 효율을 실제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청에서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현재 중국단계(지정) 심사주기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12개월(의정국) 심사기간을 7개월로 축소하였으며,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18개월(협정국) 심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였다. 올해 7월말에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심사기간이 12개월인 것을 6개월로 한층 단축할 수 있을 것이며, 올해 11월말에는 심사기간이 18개월인 것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